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01년 3월 21일, 민주, 공산, 사민의 공동 제출)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금번의 대전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사변등과 관련되는 시기에 있어서, 구육해군의 관여하에,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인 행위가 강제되었으며, 이에 의해 그들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되어진 사실에 입각하여,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나타냄과 아울러 그들 여성의 명예등의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나라의 책임에 두고 강구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해결의 촉진을 도모하여, 보다 관계 제국민과 우리 국민과의 신뢰관계의 조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명예있는 지위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전시에 있어서의 성적 강제」란, 금번의 대전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사변등과 관련되는 시기에, 구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의 관여하에, 그 뜻에 반해 모집된 여성에 대하여 행해진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인 행위의 강제를 말한다.

2. 이 법률에 있어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란, 전시에 있어서의 성적 강제에 의해 피해를 받은 여성으로, 구호적법(大正3년 법률 제26호)의 규정에 의해 본적(本籍)을 가지고 있던 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명예회복등을 위한 조치】

제3조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한편 확실하게, 전시에 있어서의 성적 강제에 의해 전시성적강제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침해된(害された) 사실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나타냄과 아울러 그 명예등의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조치에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기본방침】

제4조 정부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의 촉진을 꾀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본방침은, 다음에 열거는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전 조에 규정하는 조치의 내용 및 그 실시의 방법등에 관한 사항
- ② 전 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관계국 정부등과의 협의등에 관한 사항
- ③ 아직도 판명되고 있지 않은 전시에 있어서의 성적 강제 및 그에 의한 피해 실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④ 전 3항의 기재된 것 이외에,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했을 때는, 이것을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포해야 한다.

【관계국 정부등과의 관계에 관한 배려】

제5조 정부는, 제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그 외의 국제약속과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관계국의 정부등과 협의하여, 그 이해와 협력 아래서 이를 실행하도록 특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전시성적강제피해자의 인권등에의 배려】

제6조 정부는, 제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시성적강제피해자의 의향에 유의함과 더불어, 그 인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2. 정부는, 제4조 제2항 제3호의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그 외 관계인의 명예를 해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

제7조 정부는, 제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정상의 조치등】

제8조 정부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또는 법제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등】

제9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해서 강구한 시책 및 제4조 제2항 제3호의 조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그 개요를 공표해야 한다.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 촉진 회의】

제10조 내각부에,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 촉진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2. 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주관한다.

①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하는 것.

②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상호의 조정을 하는 것.

③ 제4조 제2항 제3호의 조사를 추진하는 것.

④ 전 3호의 기재된 것 이외에,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그에 관한 시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

3. 회의는, 그 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설명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가 있다.

4. 회의는, 그 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가 있다.

【회의의 조직】

제11조 회의는, 회장 및 위원을 두어 조직한다.

2.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3. 위원은, 내각 관방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내각부 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89호)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명담당대신 중,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조사추진위원회】

제12조 회의에, 제10조 제2항 제3호에 열거한 사무를 실행하기 위해, 조사추진위원회를 둔다.

2. 조사추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제4조 제2항 제3호의 조사의 상황 및 그 결과를 정리해 이것을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조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13조 전 3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 그 외 회의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해 1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2.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다음의 1항을 더한다.

3. 내각부는, 제3조 제2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제4조 제3항 및 전 2항에

규정하는 사무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 호)가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부칙 제4조의 2로 다음의 1항을 더한다.

2.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동법이 정하는 곳에 의해 내각부에 위치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 촉진회의는, 본부에 둔다.

【이 법률의 실효】

3. 이 법률은, 부칙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기산해 10년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유

금번의 대전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사변등과 관련되는 시기에 있어서, 구육해군의 관여하에,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인 행위가 강제되었으며, 이에 의해 그들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된 사실에 입각하여,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나타냄과 아울러 그들 여성의 명예등의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나라의 책임에 두고 강구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시성적강제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해결의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해 필요하는 경비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해,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회의에 있어서의 조사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계되어 필요로 하는 경비는, 평년도 약 천백만엔으로 전망한다.